

#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.  
제 출 자 : 공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인당 박동진 선생의 생애, 업적 등을 알리고 중요무형문화유산 판소리 (적벽가)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건립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(교육관, 전시관, 생활관, 화장실 등)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
- 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에 따라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.

## 2. 제안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 위탁)
- 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- 「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## 3. 민간위탁(안)

- (시 설 명)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
- (시설위치) 충남 공주시 무룡중말길 22-14번지 일원
- (위탁기간) 3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- (위탁범위)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

《 위탁 시설 》

주요시설 현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수관(110.16㎡)    • 전시관(198㎡)    • 생활관(165.8㎡)</li> </ul> </li> <li>- 주변 시설 : 화장실(50.88㎡)</li> <li>-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동진 유물 139점    • 전시 영상</li> <li>• 사무 집기류 일체</li> </ul> </li> </ul>	

○ (위탁비) 55백만원

○ (위탁방법) 재위탁

○ (위탁내용)

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등 시설 관리·운영
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안내 및 홍보
- 판소리 전수교육,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
- 그 밖에 판소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활동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나. 관계법령 발췌문 : 붙임

부서명	과장	팀장	담당자
문화재과 (문화재정책팀)	조병철	안광희	남궁셋별
	840-8201	840-8202	840-2626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재정 소요 요인 및 관계 조문

- 1998년 10월 건립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(교육관, 생활관)과 2009년 2월 건립된 전시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시관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에 따라 판소리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관련 근거
  - 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  - 「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## 2. 재정 소요 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, 운영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함.

### 나. 추계결과

#### 1) 연도별 추계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과목별 \ 연도별	합계	2024년	2025년	2026년
민 간 위 탁 금	165	55	55	55

## 2) 세부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년간비용	산 출 기 초	비고
계	55,000		
인 건 비	47,000	○ 인건비(기본급, 수당, 보험료 등)	
일 반 운 영 비	8,000	○ 전지 및 제초작업비 ○ 사무용품 등 운영비 ○ 전수관 홍보비	

## 3)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과목별 \ 연도별	합계	2024년	2025년	2026년
민 간 위 탁 금	165	55	55	55

## 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○ 해당 없음

## 4. 작성자

○ 문화복지국 문화재과장 조병철 (☎ 041-840-8201)

**【참고자료】**

생신등록번호	문화재과-14526	주무관	문화재정책팀장	문화재과장	문화복지국장	부시장	시장
등록일	2023. 8. 30.						2023. 8. 30.
결재일	2023. 8. 30.	남궁셋별	안광희	조병철	강석광	이순종	최원철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	협 조 자	주무관	이효진	주무관	송태훈	
			주무관	임효시	주무관	방성연	

「박동진판소리전수관 관리·운영」  
**민간(재)위탁 추진 계획**

**〈 결재요지 〉**

- 박동진판소리전수회(現 수탁기관)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(위탁기간) 3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  - (위탁비) 50백만원



**문화재과**

# 「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」 민간(재)위탁 추진 계획

## 1 근거 규정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 위탁)
- 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- 「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## 2 추진 방향

- 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(적벽가) 보유자였던 인당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, 유물 전시 등을 위해 건립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(재)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
## 3 추진 계획

### ① 위탁 개요

- (시설위치) 충남 공주시 무룡중말길 22-14번지 일원
- (위탁기간) 3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- (위탁비) 50백만원
- (위탁방법) 재위탁
- (위탁범위)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
- (수탁단체) 박동진판소리전수회(現 수탁기관)

## ② 위탁 사무

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·운영
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안내·홍보
- 판소리 전수교육, 자료의 수집 및 전시
- 그 밖에 판소리 보존과 선양을 위한 활동

## ③ 위탁 시설

주요시설 현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관(110.16㎡)</li> <li>• 전시관(198㎡)</li> <li>• 생활관(165.8㎡)</li> </ul> </li> <li>- 주변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장실(50.88㎡)</li> </ul> </li> <li>-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당 박동진 선생 유물 139점, 전시 영상</li> <li>• 사무 집기류 일체</li> </ul> </li> </ul>	

# 4

## 부서 의견

- 1998년 10월 개관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은 2004년 박동진판소리 전수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9년간의 수탁 관리·운영 중으로 인당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보존·전수 등 판소리의 보존 및 선양을 위한 교육, 체험, 홍보 시설로 활용하고 있음.
- 박동진판소리전수회는 19년간의 전수관 수탁 관리·운영 경험과 판소리 관련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전수관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5

### 향후 일정

---

- 2023. 9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- 2023. 11월 공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- 2023. 12월 민간(재)위탁 운영 재계약 체결
- 2024. 1월 ~ 2026. 12월 민간(재)위탁 운영

# 【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】

대백제, 세계와 통(通)하다.(2023.9.23. - 10.9.)



## 공 주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3년 제5회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

1. 2023년 제5회 공주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획감사실 및 회계과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심의일시 : 2023. 9. 25.(월) 14:00

나. 심의결과

의안 번호	주관부서	심의안	위탁방식	의결사항
제 1호	지역활력과	소호골 열린공간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신규 (수의)	원안가결
제 2호	평생교육과	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위탁 (공모)	원안가결
제 3호	문화체육과	아트센터고마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계약	원안가결
제 4호	문화체육과	공주문예회관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계약	원안가결
제 5호	문화체육과	공주문화예술촌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계약	원안가결
제 6호	관광과	공주 고마열차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위탁 (공모)	원안가결
제 7호	문화재과	우금터 방문자센터(우금터전적 알림터) 시설 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계약	원안가결
제 8호	문화재과	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계약	원안가결
제 9호	경로장애인과	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재위탁 (공모)	원안가결
제 10호	여성가족과	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심의안	재위탁 (공모)	원안가결
제 11호	여성가족과	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안	재위탁 (공모)	원안가결
제 12호	도시재생과	공산성어울림센터 공동이용시설 운영·관리 민간위탁 심의안	신규 (수의)	원안가결

※ 유의사항 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후 → 시의회 동의

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적용 대상은 반드시 회계과에 문의

2. 아울러 위탁부서에서는 수탁업체 선정 공고 및 계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(붙임1, 2)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
3. 사무·시설의 위탁 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추진 계획(붙임3~5)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1부.
  2.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매뉴얼 1부.
  3. 공주시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추진 계획 1부.
  4.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(표준서식) 1부.
  5. 자체감사 착안사항(예시) 1부. 끝.

공 주 시 장

수신자 기획감사실장, 지역협력과장, 회계과장, 평생교육과장, 문화체육과장, 관광과장, 문화재과장, 경로장애  
인과장, 여성가족과장, 도시재생과장




---

주무관 박건영 인사팀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2023. 10. 4.  
박인규

협조자

시행 행정지원과-27917 (2023. 10. 4.) 접수 문화재과-16420 (2023. 10. 4.)

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,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(봉황동) / <http://www.gongju.go.kr>

전화번호 041-840-2069 팩스번호 041-840-3707 / [squall18@korea.kr](mailto:squall18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# 자료 1

## 시 설 위 치 도

(S=1:10,000)



자료 2

현 장 사 진



사진설명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교육관 전경



사진설명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전시관 전경

## 자료 3

# 관계법령 발췌문

### <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>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<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>

제6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(적벽가)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기간 만료 1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, 기념품 판매소,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08.11.14.)
-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,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 〈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〉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